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직접 소유	가맹점 소유	
가맹점 수		운송 가맹점	주선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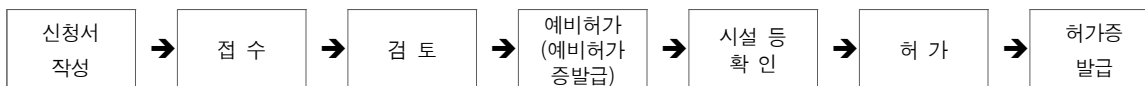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6. 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 -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자 르 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직인